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 
제251회 제2차 정례회 (2021. 12. 8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 
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 최국모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1-128
- 나.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1년 11월 16일(화)
- 라. 위원회 회부일자: 2021년 11월 17일(수)

### 2. 제출사유

아트센터 리모델링 후 관련 부대시설인 도서관이 폐관되고 객석 증설에 따른 대관료 등의 현실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, 보훈대상자를 시설 이용요금 할인대상에 추가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독서실 폐관에 따라 독서실 사용시간 삭제 (안 제9조)
- 나. 보훈관계 법령 할인대상자 추가, 여성할인제도 정비 (제13조의3)
- 다. 공연장 리모델링 및 객석 증설에 따른 대관료 인상 (별표)

### 4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, 139조, 144조
- 2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3)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
- 4)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
- 5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6)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요금감면 자치법규 정비계획(행정안전부)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1. 10. 14. ~ 11. 3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행정규제 사전심사 결과: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.

## 5. 검토의견

- 마포구에서 출연한 (재)마포문화재단내 마포아트센터의 공연장 등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재개관함에 따라 대관료를 조정하고, 국가보훈대상자 중 동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2021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7일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- 개정안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5호를 신설하여 “대관료”의 정의 조항을 추가하였으며,
- 안 제6조제2항은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)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성 평등을 위한 양성평등법에서의 요구사항을 일정 범위 개정안에 담고 있음.
- 안 제8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개정안에서는 단서조항을 달아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사용 순위를 정함에 있어 운영위원회의 규약에 따르게 하고 있음. 이는 특정 단체가 공연장 대관 독점을 방지하고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.
- 안 제9조에서는 독서실 폐관에 따라 독서실 사용시간을 삭제하였고,
-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의 2까지는 용어 및 띄어쓰기의 정비내용을 담고 있음.

- 안 제13조의3 제13호 ~ 16호를 각각 신설하여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할인 대상자를 추가하였는 바,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요금감면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권유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정책을 따르고 있고,
- 안 제14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대관 사용자가 기획·주관하는 공연의 공연장 대관료는 제13조의3 할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.
- 그리고 개정안을 따라 조례 별표의 각 항목을 수정하고 있음.
- 이와 같이 개정안을 살펴본 바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 공사 준공에 따른 대관료를 조정하고,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며 국가보훈처의 권고에 따라 시설 할인 대상에 누락된 국가보훈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개정안에서도 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아트센터 공연장 등은 자체행사 사용으로 실제 대관 가능일수가 적은 반면, 민간 대비 저렴한 사용료 및 접근의 편리성 등의 이유로 대관 희망자는 많을 것이므로 공정한 대관심의위원회 운영을 요한다 할 것임. 또한 우수 작품, 실적이 많은 단체 위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영세한 단체, 신규 예술인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이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재단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